

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3. 11. 22.

예 천 군 수

1. 모집인원

사업유형	모집인원	자격요건	근무기간
합계	80명	만 18세 이상 관내 미취업 등록장애인	'24. 1. 1. ~ 12. 31. (1년)
일반형일자리(전일제)	36명		
일반형일자리(시간제)	14명		
복지일자리(참여형)	29명		
특화형일자리 (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)	1명		

2. 근무시간 및 보수

○ 근무시간

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1~11월 주 40시간 / 12월 주 37.5시간
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1~11월 주 20시간 / 12월 주 19시간
- 복지일자리(참여형) : 주20시간, 월 56시간
- 특화형일자리(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) :

1~11월 주 25시간 / 12월 주 23.5시간

○ 근무내용 : 복지서비스지원 및 일반행정업무, 요양보호사 보조 등

○ 근무지 : 군청, 복지시설, 읍·면 행정복지센터, 노인복지시설 등

○ 보수

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1~11월 2,060,740원 / 12월 1,932,560원
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1~11월 1,030,370원 / 12월 977,120원
- 복지일자리 (참여형) : 1~12월 552,160원
- 특화형일자리(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) :

1~11월 1,291,660원 / 12월 1,212,780원

*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된 금액으로,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있을 수 있음

○ 퇴 직 금

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 : 2,366,400원
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 : 1,183,200원
- 특화형일자리(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) : 1,479,000원

* 사업기간(1. 1. ~ 12. 31.) 전체 참여자 대상으로 지급(중도포기 및 중도 참여 시 미지급)

* 복지일자리 참여자(월56시간)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.

3. 신청자격

○ 신청자격 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관내 미취업 장애인

○ 거 주 지 :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으로 되어 있는 자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 - ※ 단,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-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-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 - 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 - ※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를 제외한 사업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·간헐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가능
-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 - 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 - 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(차상위는 미해당), 만 65세 이상인 자
-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(등급외자는 신청 가능)
-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4. 선발방법

○ 1차시험 : 서류전형(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)

- 평정요소 : 사업참여경력, 장애정도, 소득수준, 가점여부 등

○ 2차시험 : 면접전형(1차시험 합격자 대상, 직무수행능력 및 평정요소별 평가)

- 평정요소 : 직무 수행능력, 업무 이해도, 대민서비스업무 적합도, 참여의지 등
- 시험방법 : 그룹면접, 면접위원 심사점수 합산

○ 최종선발 : 1, 2차시험 득점한 점수 개인별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정

○ 동점자 발생시 우선선발 기준

- 1순위 : 최근 3년간('21~'23)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2순위 : 최근 3년간('21~'23)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최근 3년간('21~'23)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3순위 : 여성가장, 기초생활수급자
- 가점대상 : 취업지원 대상자, 졸업예정자,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

5. 시험일정

공고 및 신청기간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(예정)	최종선발 합격자발표
'23. 11. 22.(수) ~ 12. 4.(월)	'23 12. 8.(금)	'23. 12. 12.(화) ~12. 13.(수)	'23. 12. 26.(화)

*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

*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개별 통보

6. 신청서류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11. 22.(수) ~ 12. 4.(월) 09:00~18:00 *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접수방법 : 신청기간 내에 본인 방문접수(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)
- 접수처 :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방문 신청·접수

7. 제출서류(붙임서식)

- (필수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[서식1]
- (필수)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[서식2]
- 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부[서식3]
- (필수)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* 1부[서식4]
 - *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** 등 구비서류[서식1 하단참조]
 - **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번으로 문의,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발급 가능
- (해당자에 한함)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
 - * 일반형(전일제/시간제)일자리: 컴퓨터 관련 자격증,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
 - * 특화형일자리(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): 요양보호사 자격증,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

- **(해당자에 한함)** 특수학교(급), 대학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* 졸업예정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이 있더라도 최근3년간 참여경력이 없는
 자로 간주함
- **(해당자에 한함)** 여성가장일 경우 아래 관련서류

구분	제출서류	
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	
배우자 유(有)	부모 부양시	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
	가출, 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으로 요양 중	의사진단서
	군복부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

(참고)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- ① 미혼여성이거나,
-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
- 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
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 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
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
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8. 참고사항

-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‘적극적인
 구직 활동’ 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 (구직활동을 증명하는
 서류 제출 필수)
-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시 퇴직금 미지급
 * 예시: 일반형일자리 시간제(1.1.~5.31.) → 전일제(6.1.~12.31.)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
- 사업유형 변경(중도종료 후 재입사) 연가: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

-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 성범죄경력 등 범죄경력의 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 [별지2] 참조
-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 [별지3-1] 참조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 [별지3-2] 참조
-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. (최종합격자 제외한 구직자 대상)
-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가까운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또는 예천군 홈페이지(<http://www.ycg.kr>) 공고 게시판 참조.
- 모든 서류의 작성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선발을 취소함.
-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정,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.
-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(☎054-650-8497) 또는 가까운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문의.

붙임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식 1부. 끝.

참고

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내용

*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구분	총점의 10점 가점	총점의 5점 가점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	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- 애국지사가 제63조항*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* 6조1항: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	- 애국지사의 가족 - 애국지사가 제63조항*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* 6조1항: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- 제2항제3호*에 해당하는 자 * 제2항제3호: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	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	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
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	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 * 제1호: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
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	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4조	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	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성범죄경력조회 및 참여제한 관련법

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 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의2(종사자)
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단,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- *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[별지3-1]

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소득 공제액범위 근거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-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- 24세 이하(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 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 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[별지3-2]

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근거

- 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 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